

평창군공공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제안연월일 : 2001년10월13일

제안자: 조례심사특별위원회

1. 수정이유

- 안중 잘못된 사항에 대한 자구수정

2. 수정주요골자

- 안 제7조제항중 "제20조"를 "제19조"로 수정

평창군공공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

평창군공공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7조제3항중 "제20조"를 "제19조"로 수정한다

수 정 안 대 비 표

원 안	수 정 안
<p>제7조(시설의 개방)</p> <p>① ~ ② (생략)</p> <p>③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제2항 각호에 규정된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④ ~ ⑤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7조(시설의 개방)</p> <p>① ~ ②(원안 제1항및제2항과 같음)</p> <p>③----- ----- ----- 제19조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④ ~ ⑤ (현행과 같음)</p>